

시중에 유통중인 농약, 어떻게 관리되나?

농촌진흥청·시도 수시 검사 부정·불량농약 설고 없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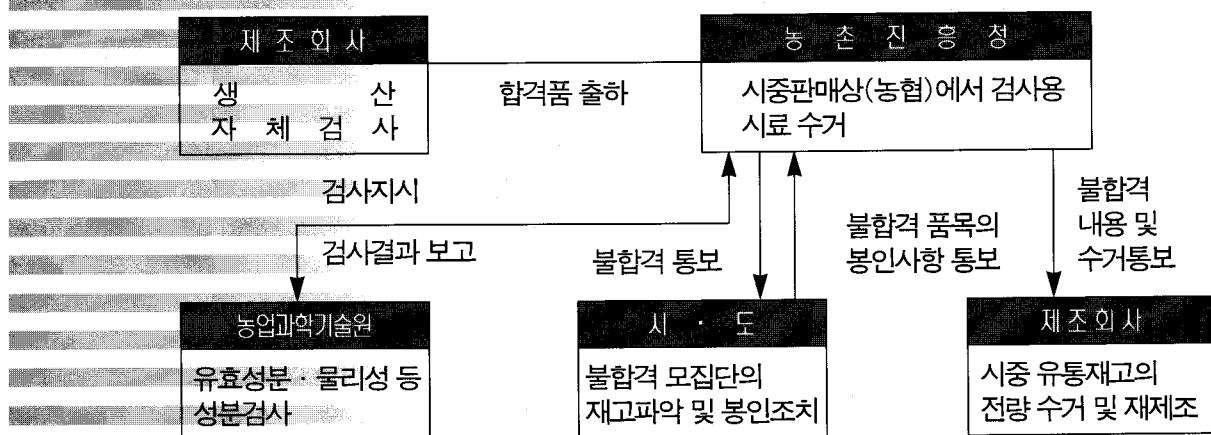
유통농약 무작위 발취, 이화학검사 실시

전국 20곳 신고센터 설치, 신고자 보상도

홍보부

농약은 의형적으로는 완전하게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약효, 약해와 독성 및 안전성 등에 대해서는 사용자인 농업인이 쉽게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기관의 전문가에 의해서 평가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제조회사는 등록기준에 적합한 농약만이 생산될 수 있도록 철저한 품질관리를 하고 있으며 농촌진흥청과 시·도에서는 수시로 유통단속검사를 실시함으로써 부정·불량농약이 벌붙이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 유통농약의 품질검사 체계



농촌진흥청에서는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농약 중 특히 과거 불합격이 빈번하게 발생했던 품목 또는 품질관리 특별대상으로 지정한 품목을 수거하여 품질확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 유통중인 농약 중 시·도 농약검사공무원이 무작위로 발취하여 분석을 의뢰한 농약 및 약해 발생 민원농약에 대해서도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이화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밖에도 유통중인 농약에 대해 포장 및 표기상태

등을 수시로 점검함으로써 우수한 농약이 유통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약덕 업자들이 가짜 부정농약을 몰래 제조해 유통시키려한 사례가 있어 농업인이 농약을 구입할 때는 부정농약이나 불량농약이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

부정농약이란 제조업이나 수입업을 등록하지 않은 사람이 등록되지 않은 농약을 몰래 제조하거나 밀수입한 농약을 말한다. 그 유형을 보면 다음과 같다.

○ 무등록 농약 : 약효, 약해, 잔류성 등의 시험을 거치지 않아 농약으로 등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약효나 안전성 등이 검증되지 못했는데 농약으로 써의 약효 등을 선전하는 자재



- 밀수입한 외국 농약 : 외국으로부터 밀수입하거나 외국상표를 도용해 밀제조한 농약으로 외국여로 된 파벨(포장지)을 사용한 농약
- 농약의 표시를 하지 않거나 약효보증기간, 적용병해충 등 표시사항을 위조 또는 변조하여 허위로 표시한 농약
불량농약이란 등록된 업체에서 정상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한 농약이 유통과정에서 훼손되거나 변질된 농약을 말한다. 그 유형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약효보증기간이 끝난 농약
- 포장지가 훼손되었거나 약액이 새어나와 포장지 내용을 알아보기 어려운 농약

- 농약품질검사 결과 불합격된 농약과 같은 모집단의 농약
- 자체검사필증을 붙이지 않은 농약 특히 부정농약은 우리 나라에서 안전성, 효능 등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약해 등 농작물에 피해를 일으키기 쉬우며 농경지 오염이나 인축에 큰 위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절대 취급해서는 안되겠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관계인이 알아두면 유익할 부정·불량농약의 식별요령을 보면 다음과 같다.

○ 라벨(농약포장지)에 등록번호가 표시 안 된 농약

- 특히 번호가 있더라도 농약등록번호가 없으면 부정농약(예: 00-살충-00)

○ 판매가격이 현저히 싼 농약

- 부정농약은 정상제품의 1/2~1/10 가격에 판매

○ 일정한 판매장소 없이 점조직 형태로 운영하거나 차량으로 이동하며 판매하는 농약

- 비닐하우스 단지 등에서 이동판매

○ 라벨을 위조 또는 변조하여 인쇄내용이 조작하거나 수축테이프 등의 부착상태가 부실한 농약

○ 불법 밀수입되어 주로 외래어로만 표시 되어 있는 농약

- 농업인들의 외제선호 심리를 이용, 우리말 라벨을 붙이지 않고 그대로 판매

○ 모든 병해충 또는 식물생육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하고 있는 농약

- 선전문구가 요란하거나 과대 허위선전 등의 유사농약(다수 병해충 예방 및 치

료효과, 생장촉진, 연작장애 방지, 증수효과 등)

○ 포장지 끝에 “이 제품은 비료도 아니고 농약도 아닙니다”로 표시된 농약

농촌진흥청에서는 부정·불량농약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중앙단속반을 편성하여 판매업소를 중심으로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어 법규위반 농약 유통이 현저히 줄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무등록 또는 밀수입 농약이 뿐만 아니라 있어 전국 20개소에 부정·불량농약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신고자에 대한 보상제를 실시하고 있다.

신고대상은 △무등록·밀수입 등 부정농약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약효보증기간이 지났거나 약효보증기간을 표시하지 않은 농약을 판매 또는 유통시키는 행위 △기타 농약관리법 위반 행위 등이다.

신고는 농촌진흥청, 시·도 또는 시·군의 농약담당과로 할 수 있고 신고방법은 전화, 우편, 팩서, FAX 등 어떤 방법도 가능하다. **농약정보**

◇ 부정·불량농약 신고보상금액

신 고 내 용	보 상 금 액
○ 무등록농약 밀조 행위	10만원
○ 무등록·밀수입농약 유통판매 행위	5만원
○ 표시사항을 위·변조하여 허위표시를 한 농약의 판매행위	5만원
○ 농약을 개포장 또는 분포장 하여 판매하는 행위	5만원
○ 농약관리법상 농약의 정의에 해당하는 유사농약 판매행위	5만원
○ 포장지 훼손 및 약액누출로 식별이 곤란한 농약을 판매하는 행위	3만원
○ 자체검사필증 미부착 농약 또는 불합격모집단 농약의 판매행위	3만원